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자모집공고(案)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견본주택 관람을 대체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prugio.com/house/2020/yeongheung>)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시에는 마스크, 체온체크 등 예방 절차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공급계약시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은 날짜 및 시간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견본주택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적 과도한 집객방지를 위함의 조치이므로 양해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에는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 제한이 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체온 체크 시 37.3도가 넘을 경우 입장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발판소독, 손 소독, 체온측정 등의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 불가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00-029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 확인, 청약자격사전관리, 청약가상체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공동주택과 - 43495호(2020.09.0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04. 입니다.(청약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 됩니다.(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약접수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 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04.)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2018.09.04.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04.)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성년자에게 우선공급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1순위 청약 및 당첨 시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며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거주 인정기준
 -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 해당기간(①,②) 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불가 합니다.
 -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 적용사례
 -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합니다.
 -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 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19.09.13. 시행)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원천동에서 용인시 영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단, 용인시 영덕동에서 수원시 영통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20.07.24. 시행)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 39-50번지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단, 화성시 반정동에서 수원시 영통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주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이버 건보주택(<https://www.prugio.com/house/2020/yeongheung>)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조정대상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 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 ①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②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③ “경기도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일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모든 주택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각호의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간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해당지역 (수원시 2년이상 거주)	1순위 기타지역 (수원시 2년 미만/ 경기/서울/인천 거주)	일반2순위 (경기/서울/인천)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09월 14일(월)	09월 15일(화)	09월 16일(수)	09월 17일(목)	09월 23일(수)	09월 25일(금)~ 10월 06일(화)	10월 12일(월)~ 10월 21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 접수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공동주택과 - 43495호(2020.09.0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3개동 총 1,509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3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6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2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1041	01	77.9781	77	77.9781	22.9970	100.9751	48.4368	149.4119	45.9737	156	15	15	31	4	65	91	7
		02	84.9839A	84A	84.9839	24.9822	109.9661	52.7884	162.7545	50.1042	553	55	55	110	16	236	317	24
		03	84.9868B	84B	84.9868	24.6524	109.6392	52.7902	162.4294	50.1059	162	16	16	32	4	68	94	7
		04	84.9957C	84C	84.9957	24.9664	109.9621	52.7958	162.7579	50.1111	307	30	30	61	9	130	177	13
		05	84.9954D	84D	84.9954	25.2341	110.2295	52.7956	163.0251	50.1109	143	14	14	28	4	60	83	6
		06	117.4366A	117A	117.4366	32.5413	149.9779	72.9467	222.9246	69.2374	75	-	7	-	2	9	66	3
		07	117.7413B	117B	117.7413	33.7069	151.4482	73.1359	224.5841	69.4170	113	-	11	-	3	14	99	5
합 계											1,509	130	148	262	42	582	927	65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기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기본주택(<https://www.prugio.com/house/2020/yeongheung>)의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동호별	타입	층수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10%)	2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일+1개월	2021.03.05	2021.07.05	2021.11.05	2022.06.05	2022.10.05	2023.02.05		입주지정일
77.9781	106동 1호	77	1층	4	266,162,000	225,838,000	-	492,0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98,400,000
	107동 1호		2층	7	275,359,000	233,641,000	-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01,800,000
	108동 5호		3층	7	284,555,000	241,445,000	-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05,200,000
	110동 5호		4층	7	293,752,000	249,248,000	-	543,0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08,600,000
	111동 5호		5층이상	131	302,949,000	257,051,000	-	56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12,000,000
84.9839A	103동 2호	84A	1층	7	308,359,000	261,641,000	-	570,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106동 2,3,5호		2층	22	318,637,000	270,363,000	-	589,0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117,800,000
	107동 2,3,5호		3층	24	329,457,000	279,543,000	-	609,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08동 1,3,4호		4층	24	339,735,000	288,265,000	-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25,600,000
	109동 3,4호		5층이상	476	350,555,000	297,445,000	-	648,0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129,600,000
84.9868B	101동 3,4호	84B	1층	1	308,359,000	261,641,000	-	570,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102동 4호		2층	7	318,637,000	270,363,000	-	589,0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117,800,000	
	104동 3,4호		3층	7	329,457,000	279,543,000	-	609,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05동 3,4호		4층	7	339,735,000	288,265,000	-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25,600,000
			5층이상	140	350,555,000	297,445,000	-	648,0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129,600,000
84.9957C	101동 2호, 102동 2호	84C	1층	6	308,359,000	261,641,000	-	570,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103동 4호, 104동 4호		2층	11	318,637,000	270,363,000	-	589,0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117,800,000
	105동 2호, 106동 4호		3층	13	329,457,000	279,543,000	-	609,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07동 4호, 108동 2호		4층	13	339,735,000	288,265,000	-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25,600,000
	109동 2호, 110동 2호, 111동 2호, 112동 2호, 113동 2호		5층이상	264	350,555,000	297,445,000	-	648,0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129,600,000
84.9954D	101동 5호	84D	1층	5	308,359,000	261,641,000	-	570,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102동 5호		2층	6	318,637,000	270,363,000	-	589,0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117,800,000
	103동 1호		3층	6	329,457,000	279,543,000	-	609,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04동 5호		4층	6	339,735,000	288,265,000	-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25,600,000
	105동 5호, 109동 5호		5층이상	120	350,555,000	297,445,000	-	648,0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129,600,000
117.4366A	102동 3호	117A	1층	3	368,268,700	312,483,000	31,248,300	712,0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142,400,000
	103동 3,5호		2층	3	381,199,500	323,455,000	32,345,500	737,0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147,400,000
			3층	3	393,613,200	333,988,000	33,398,800	761,0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152,200,000
			4층	3	406,026,900	344,521,000	34,452,100	785,0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157,000,000
			5층이상	63	418,957,700	355,493,000	35,549,300	810,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162,000,000

117.7413B	101동 1호	117B	2층	2	381,199,500	323,455,000	32,345,500	737,0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147,400,000
	102동 1호		3층	4	393,613,200	333,988,000	33,398,800	761,0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152,200,000
	104동 1호		4층	5	406,026,900	344,521,000	34,452,100	785,0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157,000,000
	105동 1호		5층이상	102	418,957,700	355,493,000	35,549,300	810,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162,000,000
	109동 1호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77.9781	84.9839A	84.9868B	84.9957C	84.9954D	117.4366A	117.7413B
약식표기(타입)	77	84A	84B	84C	84D	117A	117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지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 부대시설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치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주첨하여 주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청약 및 계약일정, 분양가, 분양대금 납입일 등)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 특별공급 안내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77	84A	84B	84C	84D	117A	117B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4	14	5	8	4	-	-	35
	국가유공자	3	11	3	6	2	-	-	25
	중소기업 근로자	3	11	3	6	3	-	-	26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3	10	3	5	3	-	-	24
	장기복무제대군인	2	7	2	4	2	-	-	17
	북한이탈주민	0	2	0	1	0	-	-	3
다자녀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50%)	8	28	8	15	7	4	6	76
	기타지역(서울, 인천) 거주자 (50%)	7	27	8	15	7	3	5	72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소득(75% 우선공급)	24	83	24	46	21	-	-	198
	상위소득(25%)	7	27	8	15	7	-	-	6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16	4	9	4	2	3	42
합계		65	236	68	130	60	9	14	582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 일부개정안으로 지역우선공급(경기도 거주) 50%,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시, 인천시)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또한,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통장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44 1042 2128 1225">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13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경기남부보훈지청), 장애인(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경기남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 복지단), 북한이탈주민(하나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14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됩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수원시 2년 이상 거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배점 기준표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기준		비 고
	배점	기 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6)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	100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대상세대 26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는 혼인신고일 이후에 출산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의미하며, 자녀의 출산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자녀를 출산한 날**(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상 일자)이 **혼인신고일 이후**여야만 1순위 요건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이상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입주자 선정 순서(소득→순위→거주지역→미성년자녀수) , 2순위 경쟁시 동일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 우선공급 75%→1순위→수원시 2년이상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 자(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수도권거주자(수원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미성년자녀수 많은 자(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 일반공급 25%→1순위→수원시 2년이상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 자(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수도권거주자(수원시2년 미만 거주자 포함)→미성년자녀수 많은 자(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대상세대 : 총 4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 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동·호수 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감정원 청약홈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당첨자 및 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합니다. <p>•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p> <p>•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p> <p>• 기타 특별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합니다.</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건본주택)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건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하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동일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부적격 처리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 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 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청약신청자 중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수원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수원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보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또는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순위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유의사항,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p>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규칙 제3조 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포함)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2)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 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수원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3)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원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불가)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

	<p>(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p> <p>(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p> <p>(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p> <p>(4)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시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p>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천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가점제 10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p>[해당지역]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수원시 2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p>
		전용면적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천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가점제 50%, 추천제 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천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됩니다.(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 못한 자. 	
	모든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2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자의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합니다.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수원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주택공유지분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 됩니다)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유지분 포함)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5.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6.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가격 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수원시거주 2년 미만/경기/서울/인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 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조정대상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조정대상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 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4 청약 신청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9.14. (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3-5)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0.09.15 (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순위(기타지역)	2020.09.16 (수) 08:00~17:30		
	2순위	2020.09.17 (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①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개인정보활용동의서/무주택사약서		• 건본주택 비치
	○		③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확인서 발급 •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④신분증	본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외
	○		⑤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⑥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		⑦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		⑧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⑨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⑩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		⑪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해당 당첨자만 해당)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건본주택 비치
		○	②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④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⑤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가능해야 함)
		○	⑦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	⑧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⑨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⑩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건본주택 비치
		○	②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③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 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⑤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⑥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 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직계 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하여 '상세'로 발급
	○		②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③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④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⑤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⑥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가능해야 함)
		○	⑦임신증명및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	⑧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⑨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		①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		②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신청시 추가사항	○	③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주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5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09.23 (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를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공급신청한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9.23 (수) ~ 2020.10.02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9.23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6 당첨자 제출 서류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정당 당첨자(일반공급/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2020.09.25(금) ~ 2020.10.06.(화), 공휴일제외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접수일 기준)
제출장소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건본주택(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3-5)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04.)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후 일괄 파기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 중 인터넷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건본주택으로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①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②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해당 당첨자만 해당)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⑥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	⑦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건본주택 비치
		○	②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④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⑤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⑥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가능해야 함)
		○	⑦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	⑧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⑨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⑩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건본주택 비치
		○	②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③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⑤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⑥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직계 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②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③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 서류

	○	④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⑤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⑥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가능해야 함)
	○	⑦임신증명및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 건분주택 비치
	○	⑧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⑨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분주택에 비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①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②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발급)
	○		④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⑥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초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⑦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⑧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⑨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⑩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⑪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⑫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⑬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①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계약체결

■ 계약 절차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약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계약체결 장소
정당 당첨자 (일반공급/특별공급)	2020.10.12 (월) ~ 2020.10.21 (수) (10:00~16:00)	장소 :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건분주택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3-5)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의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견본주택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입장 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 됨.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 납부 시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사항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발코니확장 계약금 포함) 입금증(납부영수증) ※ 계약금 현상 수납 불가합니다. (아파트 및 발코니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확인 바람)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으로 간주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⑦ 대리인의 인장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우리은행	1005-304-009046	교보자산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교보자산신탁(주)

- 1차 계약금 납부 : 계약금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건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 (우리은행, 1005-304-009046, 교보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상기 납부(가상)계좌 및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가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태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2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시행수탁자의 계좌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사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8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77	84A	84B	84C	84D	117A	117B	
발코니 확장비	확장비용	23,000,000	26,800,000	26,600,000	26,600,000	27,800,000	37,500,000	38,800,000	
	납부방법	계약금							
			2,300,000	2,680,000	2,660,000	2,660,000	2,780,000	3,750,000	3,880,000
		중도금							
			2,300,000	2,680,000	2,660,000	2,660,000	2,780,000	3,750,000	3,880,000
		잔금							
			18,400,000	21,440,000	21,280,000	21,280,000	22,240,000	30,000,000	31,040,000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주택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2차 계약금 납부일에 중도금 납부,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상하부장 외산도어),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확장부위 마감 연장, 침실불박이장 1개소, 클린존 수납장, 주방 우물천장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사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접합유리 난간 일체형으로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창은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통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품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선택시 비확장 부위의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단열재가 시공됩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우리은행	1005-204-008639	교보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교보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별도입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건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 (우리은행, 1005-204-008639, 교보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추가선택 품목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바닥 마감재, 주방상판 및 벽 마감재, 주방 평면오픈 및 드레스룸 특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건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현관중문 및 현관간접조명(유상)

(단위: 원, VAT 포함)

선택항목	타입	위치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현관 중문 및 간접조명	전타입	현관	미설치	현관중문 / 현관간접조명 (1면)	77	1,90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84A	2,00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84B	2,00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84C	2,00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84D	2,00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현관중문 / 현관간접조명 (1면) / 천장장식판넬	117A	2,20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117B	2,200,000	3연동 슬라이딩도어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특화품목(유상)

(단위: 원, VAT 포함)

선택항목	타입	위치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전타입	거실 주방	강마루	타일	77	418,000	※ 84C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적용
					84A	460,000	
					84B	453,000	※ 84A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적용
					84C	446,000	
					84D	436,000	※ 84C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적용
					117A	795,000	※ 117B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적용
					117B	846,000	
주방상판 및 벽 마감재	전타입	주방	주방상판 - 인조대리석 주방벽 - 타일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77	1,460,000	※ 84C 견본주택에 시공된 엔지니어드스톤 적용
					84A	1,712,000	
					84B	1,356,000	※ 84A 견본주택에 시공된 엔지니어드스톤 적용
					84C	1,885,000	
					84D	1,458,000	※ 84C 견본주택에 시공된 엔지니어드스톤 적용
					117A	2,116,000	※ 117B 견본주택에 시공된 엔지니어드스톤 적용
117B	1,858,000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및 벽 마감재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2안 선택 시 타입별로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상판 및 벽 마감재 2안 선택 시 타입별로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평면옵션(유상)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위치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선택형(유상) - 3안	2안	3안	
77	침실3	복도팬트리	침실3 드레스룸	-	500,000	-	
84A	주방/침실4	침실4	주방 특화 - 아일랜드 + 와이드 다이닝	드레스룸 수납 특화 - 유리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선반	1,000,000	3,186,000	
84B	주방/침실1	침실1 대형드레스룸	침실1 드레스룸 + 주방 팬트리	-	716,000	-	
84C	주방	'C'자형 주방	주방 특화 - 히든키친 + 독립형 다이닝	-	2,388,000	-	
	침실1	미설치	드레스룸 수납 특화 - 드레스룸 통합 / 유리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선반	-	4,648,000	-	
117A	주방/침실4	침실4	주방 특화 - 아일랜드 + 와이드 다이닝 + 주방팬트리	-	1,520,000	-	
	침실1	가구도어 + 풀대형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수납 특화 - 유리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선반	-	3,623,000	-	
	알파룸	알파룸 독립형	드레스룸/알파룸 통합형	드레스룸 수납 특화 - 가구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선반	187,000	3,516,000	
117B	주방	팬트리 + 발코니2	보조주방 특화 (순환동선) - 보조주방 수납장	-	1,003,000	-	
	침실3	복도 팬트리	침실3 파우더장 + 드레스룸	-	848,000	-	
	침실4	침실4	드레스룸 수납 특화 - 유리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선반	-	4,193,000	-	

4. 드레스룸선반 고급화 옵션(유상)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위치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84A	드레스룸	풀대형 시스템선반	벽판넬형 시스템선반	1,852,000	
84B	드레스룸	풀대형 시스템선반	벽판넬형 시스템선반	2,375,000	침실1 대형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 드레스룸선반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벽은 도배지로 마감 됩니다.

※ 드레스룸선반 옵션안에 따라 선반 구성이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주방가구 키큰장 선택(무상)

타입	위치	선택형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무상) - 2안	
77	주방	김치냉장고장	가전소물장 + 수납장	
84A		김치냉장고장	가전소물장 + 수납장	
84B		김치냉장고장	가전소물장 + 수납장	
84C		김치냉장고장	가전소물장 + 수납장	주방평면옵션 1안 선택시
84D		김치냉장고장	가전소물장 + 수납장	
117A		김치냉장고장	가전소물장 + 수납장	
117B		김치냉장고장	가전소물장 + 수납장	

※ 전기오븐 옵션 선택 시 가구선택 안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안 선택 시 : 쿡탑 하부 / 2안 선택 시 : 키큰장)

※ 84C 타입 주방평면 옵션 2안 선택 시 평면 구성 상 김치냉장고장 선택은 불가하며, 전기오븐 옵션 선택 시 쿡탑 하부에 설치 됩니다.

※ 주방가구 키큰장 1안 선택 시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6.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택형	선택안	실내기	제조사	설치위치	옵션가		비고
					일반형	공기청정형	
77	1안	2대	삼성전자	거실,침실1	3,000,000	3,600,000	확장시 유상옵션품목
	2안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600,000	6,800,000	
84A	1안	3대		거실,주방,침실1	4,400,000	5,300,000	
	2안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8,200,000	10,000,000	
	3안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평면옵션 : 주방특화 선택시]	6,900,000	8,400,000	
84B / 84C / 84D	1안	3대		거실,주방,침실1	4,400,000	5,300,000	
	2안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8,400,000	
117A	1안	3대		거실,주방,침실1	4,600,000	5,500,000	
	2안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8,600,000	10,400,000	
	3안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평면옵션 : 주방특화 선택시]	7,400,000	8,900,000	
117B	1안	3대		거실,주방,침실1	4,600,000	5,500,000	
	2안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8,600,000	10,400,000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2개소(거실, 침실1)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84A 및 117A타입 선택안 '3안'은 평면옵션 중 '주방 특화' 선택 시에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7. 빌트인 가전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구분	규격	모델명	공급업체	옵션가	비고
전타입	하이브리드쿡탑	하이라이트2구 + 가스1구	GRA-BH301H	SK매직	590,000	확장시 유상품목 옵션
		인덕션2구 + 가스1구	GRA-BI300H	SK매직	820,000	
	전기오븐	일반형	HSB-N361B	삼성전자	450,000	
		고급형	NQ50H5533KS	삼성전자	750,000	
	식기세척기	일반형	DWA-7505B	SK매직	620,000	
		고급형	DWA-80U5B	SK매직	910,000	
	드레스룸제습기	천장형, 무선리모컨	CDD-600B	코스텔	590,000	
	신발장청소기	빌트인	DSC-300	그렉스	220,000	
	빌트인김치냉장고	빌트인	RQ22K5L(R)01EC	삼성전자	1,200,000	
	빌트인양문형냉장고	일반형	BRS665040SR	삼성전자	5,400,000	
		디스펜서형	BRS655140SR	삼성전자	6,900,000	
	의류관리기	화이트 색상	S3HFB	엘지전자	1,250,000	
블랙 색상		S3DFB	엘지전자	1,290,000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제조사: 하츠 / 모델명: SSGC-3605SABH)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빌트인 김치냉장고, 의류관리기, 신발장 청소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해당 위치에 수납공간이 제공됩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평면에 따라 문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발장 청소기는 본체에 설치된 종이주머니에 흡입물이 쌓이는 방식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주기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유의 사항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좌	우리은행	1005-604-009061	(주)대우건설
잔금 계좌	우리은행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주)대우건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가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시 개별 납부)
- 납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확장 계좌와 상이(예금주 (주)대우건설)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가전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구 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시공사가 별도 통보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잔금 납부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는 입주시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완납하였더라도, 추가선택품목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단지 여건 사항

1. 단지 외부여건

[인접지역 도로, 기반시설 등의 개발 관련 사항]

- 단지 내 아파트 건물로부터 남측으로 약 3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수원자원회수시설이, 약 500미터 이격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가 위치하여 해당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로 인한 조망권, 소음, 대기질, 악취, 백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따른 수원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자는 향후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 차량 및 보행 진출입로는 영흥공원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로 향후 영흥공원 이용객 및 차량에 의해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영동로에 투명방음벽(영덕중학교 인접 도로변으로 높이 9미터, 길이 약 45미터, 늘푸른유치원 인접 도로변으로 높이 6.5미터, 길이 약 16미터 구간 등), 저소음포장 등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후 해당시설은 수원시에서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계획은 향후 소음저감시설 착공전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단지 입주 후에 소음측정이 실시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소공원 하부에는 저류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상시 우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소공원에 설치될 시설계획은 개발계획 진행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학군 관련 사항]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영덕초등학교이며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영통중학교 1구역(영덕중, 청명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지망후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단지 내부여건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권 관련 주요 고지사항]

■ 공통사항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소음, 악취로 인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물/위생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청에서 도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사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할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 및 인도(도시계획 도로)의 개보수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당해 아파트 부지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입주자 측에서 공사 시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 분양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은 본 도로(보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 등 기타 관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동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옥벽 또는 조경석쌓기로 계획되어지며, 설치여부, 위치, 규격 및 형태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 인근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굴뚝으로 인해 단지내 일부세대 조망,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106동 배면과 105동 측면에는 소공원이 설치될 계획이며, 소공원 하부에는 영흥공원 초기우수시설 영구저류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단지내에 공동주택(아파트)용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별도 지상 조업주차장이 설치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경사지형으로 인해 주차장 상호 연결부분은 경사로가 설치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7m입니다.

■ 동별/층별/위치별 여건에 따른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01동과 109동 사이에 위치한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민운동시설은 104동 5호세대 측면, 112동 1,2호세대 전면, 109동 5호세대 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전면과 108동 배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5호세대 배면에는 발전기실 급기구, 배기구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2호세대 1층에는 경로당이 계획되어 있으며, 5호세대 1층에는 주민회의실이 계획되어 있어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1호세대 지하1층에는 관리사무소, MDF, 방재실, 용역원휴게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1호세대 1층에는 게스트하우스, 5호세대 1층에는 경비실2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4,5호세대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 계획되어 있으며, 이용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2호세대 전면, 113동 1호세대 우측면에는 주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악취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3호세대 1층 전면에 새싹정류장이 설치되며, 지하주차장 진입구로 인해 소음, 진동, 시야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108동 5호세대 1층 측면, 112동 1호세대 측면에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102동 5호세대 1층 배면에는 옥외 계단이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및 계단 이용으로 인해 소음, 진동, 시야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101동,102동,103동,104동,105동 저층세대는 영흥공원 경사지형 사면부에 접하고 있으며, 시야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107동,108동,111동,112동 1층 배면 부분이 데크 경계부이며,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 105동 1층세대 전면에는 다목적체육관 지붕면이 돌출되어 있으며, 그 상부에는 텃밭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악취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남측 주출입구에서 진입 단지차량출입구는 1개소이며, 단지내에는 차없는 보행자도로이며, 비상차량, 이삿짐, 서비스차량 진입만 가능합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접근되며, 각 동별 1개소씩 택배차량 전용주차구획이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혹은, 기타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보관소 및 재활용폐기물 보관소는 각 동 지상층에, 근린생활시설용은 101동 및 113동 인근에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는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중앙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있고, 어린이놀이터 3개소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인근 동에서는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은 위치에 따라 주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악취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장비(냉난방용 실외기, 배기팬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파트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악취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D/A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세대 측면, 102동 5호세대 측면, 103동 4호세대 정면, 104동 5호세대 배면, 106동 1호세대 측면, 106동 5호세대 배면, 107동 1호세대 측면, 107동 4호세대 측면, 108동 1호세대 측면과 배면, 108동 5호세대 측면과 배면, 109동 1호세대 정면, 110동~111동 1호세대 측면, 112동 5호세대 배면, 113동 1호세대 측면에 D/A설치로 설치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탑라이트)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5호세대 정면, 103동 2호세대 배면, 104동 5호세대 배면, 105동 2호세대 정면, 106동 2호세대 배면, 108동 5호세대 측면, 108동 1호세대 정면, 109동 1호세대 배면, 110동~111동 4호세대 배면, 113동 4호세대 배면에는 쓰레기 보관소 설치로 인해 소음, 악취, 분진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1동 2호세대 정면에는 상가 조업주차 3개소가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6동 1호세대 1층 측면에는 게스트하우스, 107동 1호세대 1층과 지하1층 측면에는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107동의 4호세대 1층 측면에는 경로당의 실외기가 옥에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탑라이트)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경/색채/입면 관련 사항]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상·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조경시설의 녹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보행통로, 수목 등은 사용편의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체시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파고라 등 휴게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의 설비 시설물은 옥상시설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당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옥상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파라펫 등의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해당관청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측벽과 일부 옥상구조물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동에 인접한 상부층 세대는 빛 공해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고, 설치 개소 및 위치는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103동, 106동 및 110동에 계획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비상차량동선은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고, 비상차량동선 위로 친환경 보행로 조성을 위해 지피류 등 조경이 일부 적용되며 화재 등 비상시 차량 통행에 의한 유지보수로 입주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해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해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웬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은 직접 접촉 가능한 친수 수경시설과 단순히 감상을 위한 경관 수경시설로 나뉘지며, 이에 대한 구분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지하오니 이용시 준수바랍니다. 또한 친수 수경시설에는 수질정화 설비를 함께 설치할 예정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소독, 청소, 환수 등 유지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만이 적정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 관련 사항]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조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은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추후 입주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 푸르지오 A/S센터로 운영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수원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수원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0.197g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이상입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입니다.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부 경계선에는 동물이동 유도웬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 시야차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부 경사지형으로 인한 옹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토목옹벽에 인접한 하기 등에서는 저층부에 일부 영구옹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호별로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과 모형도를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1호옹벽: 109동/ 토목2호옹벽: 102동/ 토목3호옹벽: 102동/ 토목4호 옹벽: 103, 104동/ 토목5호 옹벽: 105동/ 토목6호옹벽: 105,106동/ 토목7호옹벽: 110,111,112,113동)
- 근린생활시설 지붕은 영흥공원 생태통로인 에코브릿지로서 접근이 차단되며, 야생동물 이동유도웬스가 설치됩니다.

11 설계 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의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천연 대리석 및 화강석 시공부위는 원석을 가공하여 사용하므로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공극과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부 상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세대 배치에 따라 평면의 좌우 방향이 반대로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위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로 인해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스마트 스위치,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가스밸브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가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LGU+,SKT) 혹은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 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 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 서비스 중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합니다.(소비가자가 별도 구축)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 등의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해당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해당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일부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호' 스티커가 부착됨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주방가구 상하부장은 이태리산 수입도어가 설치되며, 본공사 시 수입도어는 동등 이상의 이태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몸통, 키큰장 도어 및 마감판 등은 국산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저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호출,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가 되는 경우, 이에 따라 마감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내기에서 발생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대시설/공용부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환풍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구 주변 및 덮개 등의 형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공개공지 및 필로티 공간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웬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민 부담입니다.
- 각 동별 1층 필로티형 출입구 및 지하 동출입구의 경우, 주동의 구조 계획에 따라 동별로 출입구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구간에 입주자와 외부인과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난간은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방지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외부인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 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일부 실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된 사항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에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단위세대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바닥배수구, 입상배관 포함, 점검구, 전기콘센트,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발코니수전 등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내 벽지, 천장지 및 타일 등의 내부 마감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색, 재질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설치품목은 계약내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사업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1,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 공동주택 형별 마감사양 등은 형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제시한 옵션사항이외 마감사양 등의 유무상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자)건축사사무소태백	신동아 전기감리(주)	(주)건창기술단	(주)건창기술단
감리금액	4,945,437,200	692,000,000	578,600,000	180,400,000
사업자등록번호	228-81-01566	604-81-34922	204-81-48871	204-81-48871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788,180,800,000원	제 01282020-101-00089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위 공동주택의 신축 및 공급사업은 "(주)천년수원"이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천년수원"임을 계약자는 인지합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천년수원"이 부담합니다.
- "(주)천년수원"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천년수원"(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비고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건물관련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수원 영통공인[비공인시설]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청자 : 주식회사 천년수원
3.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합성작용 차단성능	★★★★	★★★★
2. 광합성작용 차단성능	★★★★	★★★★
3. 세대 간 광케이블의 차폐성능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인계월 녹지율 조성	★★★★	★★★★
21. 자연지반 녹지율	★	★
22. 생태연접률	★★	★★
23. 비오름 조성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
2. 가변성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단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질성토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지반소 에너지 효율 기술의 적용	★★★★
9. 소음증 보충을 위한 옥상물집의 사용 금지	★
10. 환경장선안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재활용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일수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롬넨트워크 통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8월 25일

한국감정원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수원 영통공인[비공인시설]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020-272
건축주 : 주식회사 천년수원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준공(예정)일 : 2023.05.31	유효기간 : 2020.08.25.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날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층수 : 지상25층, 지하2층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연면적 : 259,370.7969㎡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계자 : (주)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8월 25일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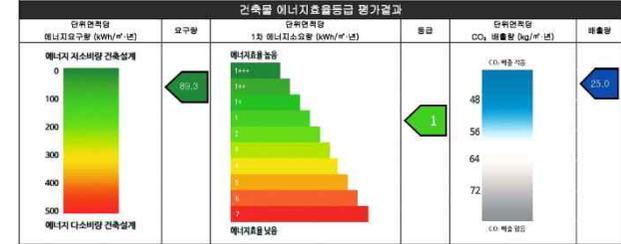


* 예비인증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수원 영통공인[비공인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0-주-영-1-0330
준공연도 : 2023.05.31	평가자 : 김성훈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층수 : 지상25층 / 지하2층	인증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259370.7969㎡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종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구분	에너지 지수비율 (kWh/㎡·년)		에너지효율등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8.7	65.8	53.0	11.6
급탕	39.7	39.5	30.1	6.7
조명	9.9	9.9	27.3	4.7
총계	89.3	119.4	111.7	2.0
합계	89.3	119.4	122.1	25.0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중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비(지정) 건축물입니다.
-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일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값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저탄소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감정원



2020년 07월 31일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사업주체 겸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호	교보자산신탁(주)	(주)천년수원	(주)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8번길 31, 304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로4가)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135811-0297383	110111-2137895

■ 견본주택 안내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3-5

■ 사이버 견본주택

• 주소 : <https://www.prugio.com/house/2020/yeongheung>

▣ 분양문의

• 1800-029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2020.09.04.(금)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2020.09.04.(금)
특별공급	신청	2020.09.14.(월)
일반공급	1순위 신청(해당지역)	2020.09.15.(화)
	1순위 신청(기타지역)	2020.09.16.(수)
	2순위 신청	2020.09.17.(목)
당첨자발표		2020.09.23.(수)
사전 서류 접수		2020.09.25.(금) ~ 2020.10.06.(화)
공급 계약		2020.10.12.(월) ~ 2020.10.21.(수)

<p>총 1,509세대</p>	<p>분양문의 1800-0290</p> <p>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3-5 사이버 견본주택 : www.prugio.com/house/2020/yeongheung</p>
-------------------------	--

